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 검 토 보 고 서

2023. 10. 17.(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숙 의원 외 6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권영숙의원 외 6명
- 제안일 : 2023. 10. 6.
- 회부일 : 2023. 10. 10. (의안번호 : 23-130)

## 2. 제안이유

장학금 신청·수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게 장학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장학금 지급과 관련 있는 조항들의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장학금의 지급대상(안 제3조)
  -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한기준을 삭제하고, “새마을 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마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함.
  - 제3조제1항제3호의 특기장학생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추천(안 제4조)

-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 회장”으로 조문 내 용어를 수정함.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입법예고: 2023. 8. 17. ~ 8. 21.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권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장학금 신청·수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게 장학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장학금 지급과 관련 있는 조항들의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항별 내용

가. 안 제3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한기준을 삭제하고, “새마을 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마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나. 안 제3조제1항제3호에는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새마을지도자 자녀”라는 지급대상 조건 중 “소질과 재능”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도가 주최

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였거나 각 분야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지급대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내용임.

다. 안 제4조에는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회장”으로 조문 내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임.

○ 연도별 장학금 지급률 현황 및 지급액

(단위: 건, 원)

연도(회차)		신청	지급	지급액	비고
2020	상반기	14	14	12,507,600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하반기	7	3	2,680,200	
2021	상반기	0	0	0	
	하반기	15	15	11,800,000	
2022	상반기	13	13	11,200,000	
	하반기	13	12	10,800,000	

##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일부개정시 입법예고 기간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아닌 학생에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현재까지 소득 제한기준을 두고 있으나 장학금 지급대상에 소득 제한기준을 두고 지원하는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가 유일함.

- 현재 동 조례는 제5조(장학생의 선정)에 따라 새마을 지도자 수(2023년 기준 630명)의 7% 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여(2023년 기준 3,600만원)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20~2022년(최근 3년간)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신청건수가 최소 0건에서 최대 15건에 불과하므로, 소득제한 기준을 삭제하여 장학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자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자원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 회원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